

2011



▪  
▪

1.

가. 기금설치개요

- (1) 설치근거 :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
- (2) 설치목적 :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·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,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(3) 설치년도 : 2003년 2월 17일(조례제정일 2003년 2월 17일 조례 제388호)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및 쾌적한 공설묘지 공원조성
- (2)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: 저소득층, 노인,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심 고취 및 사회복지 증진

다.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	2010 (A)	2011			2011 (A+B)	
				( ) (B)		
	2,121,475	399,901	414,440	14,539	2,106,936	
	1,293,635	295,565	300,000	4,435	1,289,200	
	111,991	64,256	44,440	19,816	131,807	
	456,489	21,480	20,000	1,480	457,969	
	259,360	18,600	50,000	31,400	227,960	

(2) 재원조성 : 기금운용 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

(3) 지원기준

- 기초생활보장사업 :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사업 대여로 1가구당 1천만원 범위안의 금액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7천만원 범위안에 대여
-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: 일반장학금 200천원 ~ 300천원, 특별장학금은 300천원 ~ 500천원 지급(1인당 1회 지급액)
- 노인복지사업 :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투자
- 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 : 분묘의 훼손등 비상재해 발생시 기타 공설묘지공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

(4) 지원대상

: ,

-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
  - 저소득층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중인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"미" 평정 80% 이상인 자
  - 예체능 분야에서 도 단위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에게 주는 일반장학금과 성적 "우" 평정 80% 이상인자
  - 특별장학금으로써 장학금 지급 비율은 당해연도 장학금의 80%는 일반장학금으로 20%는 특별장학금으로 지급
- 노인복지사업 :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노인복지사업
- 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 : 분묘의 훼손 및 비상재해발생 시 복구 등, 기타 공설묘지공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

2.

가.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			( )				( )
	2,513,327	2,521,376	8,049		2,513,327	2,521,376	8,049
	60,000	68,000	8,000		188,220	114,440	73,780
	0		0		300,000	300,000	0
	0		0		0		0
	201,886	237,340	35,454		0		0
	0		0		0		0
	2,128,496	2,121,475	7,021		2,025,107	2,106,936	81,829
	0		0		0		0
	86,945	82,561	4,384		0		0
	36,000	12,000	24,000				

나.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				( )	
		2,513,327	2,521,376	8,049	
200		384,831	399,901	15,070	
210		122,945	94,561	28,384	
	212	36,000	12,000	24,000	
	212-08	36,000	12,000	24,000	○ 공설묘지사용료 1,000,000 * 12 = 12,000
	216	86,945	82,561	4,384	
	216-01	67,932	63,744	4,188	○ 기금예치금 이자 ○ 기초생활보장사업 39,408,490 * 1 = 39,408 ○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4,256,800 * 1 = 4,256 ○ 노인복지지원사업 13,480,000 * 1 = 13,480 ○ 공설묘지공원사업 6,600,000 * 1 = 6,600

(단위 : 천원)

				( )	
	216-02	19,013	18,817	196	○ 기초생활보장사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18,817,150 * 1 = 18,817
	220	261,886	305,340	43,454	
	224	60,000	68,000	8,000	
	224-03	60,000	68,000	8,000	○ 일반회계 전입금 ○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60,000,000 * 1 = 60,000 ○ 노인복지지원사업 8,000,000 * 1 = 8,000
	226	201,886	237,340	35,454	
	226-01	201,886	237,340	35,454	○ 기초생활보장사업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237,340,000 * 1 = 237,340

(단위 : 천원)

			( )	
600	2,128,496	2,121,475	7,021	
630	2,128,496	2,121,475	7,021	
630	2,128,496	2,121,475	7,021	
631-01	2,128,496	2,121,475	7,021	○ 2010년도 기금예치금 회수 ○ 기초생활보장사업 1,293,635,814 * 1 = 1,293,635 ○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111,991,604 * 1 = 111,991 ○ 노인복지지원사업 456,489,000 * 1 = 456,489 ○ 공설묘지공원사업 259,360,000 * 1 = 259,360

다.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					( )			( )
사 회 복 지 기 금						2,513,327	2,521,376	8,049
사회복지						2,513,327	2,521,376	8,049
기초생활보장						342,220	344,440	2,220
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						342,220	344,440	2,220
사회복지지원						342,220	344,440	2,220
기초생활보장사업용자						300,000	300,000	0
501 용자금						300,000	300,000	0
501-01 민간용자금						300,000	300,000	0
10,000,000 * 30 = 300,000								

(단위 : 천원)

				( )			( )
				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	42,220	44,440	2,220
				301 일반보상금	42,220	44,440	2,220
				301-01	2,220	4,440	2,220
				30,000 * 148 * 1 = 4,440			
				301-02 장학금 및 학자금	40,000	40,000	0
				40,000,000 * 1 = 40,000			
				노인·청소년	2,171,107	2,176,936	5,829
				노인복지증진	146,000	70,000	76,000
				노인복지시설지원	11,000	20,000	9,000
				노인복지사업지원	11,000	20,000	9,000
				300	11,000	20,000	9,000

(단위 : 천원)

					( )			( )	
					307-03		11,000	20,000	9,000
					" "	(			
					\	20,000,000 * 1 = 20,000			
					장묘사업운영		135,000	50,000	85,000
					공설묘지지원사업		135,000	50,000	85,000
					401 시설비및부대비		135,000	50,000	85,000
					401-01 시설비		133,641	49,676	83,965
					30,000,000 * 98,92/100 = 29,676				
					(3 )				
					20,000,000 * 1 = 20,000				
					401-03 시설부대비		1,359	324	1,035
					30,000,000 * 1.08/100 = 324				

(단위 : 천원)

				( )			( )	
		재무활동				2,025,107	2,106,936	81,829
		보전지출				2,025,107	2,106,936	81,829
		보전지출				2,025,107	2,106,936	81,829
		602 예치금				2,025,107	2,106,936	81,829
		602-01 예치금				2,025,107	2,106,936	81,829
		2010						
		○			1,289,200,000원 * 1식 =	1,289,200		
		○			131,807,000원 * 1식 =	131,807		
		○			457,969,000원 * 1식 =	457,969		
		○			227,960,000원 * 1식 =	227,960		

3.

( : )

															(A - B)
	(A)				( )			(B)							
2005	4,010,185	56,578	0	0	0	636,254	3,317,353	1,849,243	732,743	1,116,500	0	0	0	0	2,160,942
2006	245,897	0	0	0	0	66,663	179,234	361,760	99,760	262,000	0	0	0	0	115,863
2007	330,291	0	0	0	0	69,001	261,290	361,068	103,908	253,200	3,960	0	0	0	30,777
2008	385,563	0	0	0	0	81,554	304,009	327,665	192,665	135,000	0	0	0	0	57,898
2009	452,483	60,000	0	0	0	157,086	235,397	396,187	170,000	226,187	0	0	0	0	56,296
2010	357,223	60,000				86,945	210,278	364,244	179,344	184,900					7,021
2011	399,901	68,000			256,157	63,744	12,000	414,440	114,440	300,000					14,539
	6,181,543	244,578	0	0	256,157	1,161,247	4,519,561	4,074,607	1,592,860	2,477,787	3,960	0	0	0	2,106,936

4.

(단위 : 천원)

	( )					
		2009	2010 (A)	2011 (B)	(B - A)	
		2,130,179	2,121,475	2,106,936	14,539	
예치금	광주은행				14,539	
	농협				0	
(기초생활보장사업)	광주은행	1,232,855	1,293,635	1,289,200	4,435	
(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)	광주은행	87,987	111,991	131,807	19,816	
	농협					
(노인복지지원사업)	광주은행	456,794	456,489	457,969	1,480	
(공설묘지조성사업)	광주은행	352,543	259,360	227,960	31,400	